

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-10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. .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2011. 8. 31일자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4. 8. 31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「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근거 마련

동두천시 조례 제 호

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443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1년 8월 31일”을 “2014년 8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총 무 과
입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총 무 과 장 장 위 순
안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시 정 팀 장 정 우 상
자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주무관 박정호 860-2122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특별 대책지역과의 존속기한은 2011년 8월 31일 까지로 한다.	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----- -----2014년 8월 31일 -----.